[별지1]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MG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본인)은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정보

고객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20 년 월 일
연락처		**이메일**	@
주소		**FAX**	

※ 금융소비자가 위법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해당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내용 (□ 체크박스 표기)

금융상품명		**회신 방법**	□ 우편 □ 전화 □ 팩스 □ 이메일
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계약위반사항을 안 날**	20 년 월 일
계약해지사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적정성 원칙 위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3항 설명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불공정영업행위 위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부당권유금지 위반		
위반 내용			

3. 증빙· 참고자료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첨부 필요	

신청인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